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18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5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0나2006328 추심금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시

소송대리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제 1 심 판 결 [redacted]법원 [redacted]지원 2020. 1. 17. 선고 2019가합71830 판결

변 론 종 결 2020. 6. 4.

판 결 선 고 2020. 7. 2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65,089,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8. 13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18

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제1심판결 5쪽 상단 표 11행 5열 가산세 합계 란 "0"을 "1,883,620"으로, 7쪽 각주 9) 4행 "2020. 1. 3.자 준비서면"을 "2019. 9. 26.자 준비서면"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